

순천대학교 복수학위제운영규정

제정 2005. 10. 18.

개정 2007. 6. 26.

개정 2010. 10. 27.

개정 2019. 11. 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학칙(이하 '학칙' 이라 한다.)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와 복수학위 수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타 대학교(이하 '교류대학교'라 한다.)와 복수학위 취득(이하 '복수학위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정의 체결) 이 대학교와 교류대학교(이하 '양 대학교'라 한다.)간에 체결한 복수학위 수여에 관한 협정서에는 복수학위과정 허용 학문 분야, 양 대학교의 선발 인원, 양 대학교간의 학점 인정 기준 및 방법, 졸업 인증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납입금 및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허용 범위) 양 대학교 학생의 복수학위과정 이수에는 제한 없이 허용하되, 교류대학교 학생이 이 대학교에서 사범대학 학과를 복수학위과정으로 이수한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업연한) 복수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양 대학교간 협정에 의한다. 다만, 이 대학교에서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

제5조(선발 자격) ① 이 대학교 학생의 복수학위과정 선발 자격은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학생으로 한다.

1. 학칙 제54조에 의한 1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학생
2. 전체 평점평균이 3.0이상인 학생
3. 학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4. 외국대학교에서 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

② 이 대학교 학생중에서 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선발 기준 및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교류대학교 학생중 이 대학교에서 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교류대학교 총장이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교류시기 등) ① 교류시기는 매 학기초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류

인원은 양 대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복수학위과정을 이수중인 양 대학교의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양 대학교의 학적을 보유한다.

③ 교류대학교 학생은 이 대학교에서 수학하는 동안 최초 배정 받은 전공을 변경할 수 없다.

제7조(등록 및 납입금) ① 복수학위과정 이수중인 이 대학교 학생은 양 대학교의 등록 절차에 따라 매 학기 양 대학교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수학위과정 이수 학생의 납입금 등은 양 대학교간의 협정에 의한다.

제8조(학사 관리) ① 이 대학교 학생이 복수학위과정을 이수중인 기간은 수업연한에 포함하며, 그 기간 동안은 재학생으로 관리한다.

② 교류대학교 학생이 이 대학교에서 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하는 기간 동안에는 학적을 부여하며, 학사 관리는 이 대학교 학칙 및 학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조(성적처리 및 학점인정) ① 양 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 평가는 해당 대학교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교류대학교 학생의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통보한다.

② 이 대학교 학생이 교류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류대학교 이수학점 인정 심사 내역표』에 의하여 소속 학부(과)장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인정하며, 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학기 동안 교과목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은 한 학기 동안 30시간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2. 이 대학교의 매 학기 취득 기준 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3. 이 대학교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재이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교양교과목 및 전공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면 교양교과목 또는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한다.
5. 교양교과목 또는 전공교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한 교과목은 일반선택교과목으로 인정한다.

③ 교류대학교 학생이 교류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교류대학교 학생 이수학점 인정 심사 내역표』에 의하여 소속 학부(과)장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인정하며, 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대학교의 교양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면 교양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이 대학교의 전공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면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한다.
3. 교양교과목의 학점 또는 전공교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한 교과목은 일반선택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 ④ 양 대학교 학생의 교류대학교 학점인정은 이미 인정받은 타 대학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이 대학교의 소속 학부(과)의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중도포기) ① 이 대학교 학생이 복수학위과정 이수를 중도에 포기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복수학위 이수 포기원』을 제출하여 소속 학부(과)장의 동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교류대학교 학생이 복수학위과정 이수를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교류대학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중도 포기 학생이 이미 취득한 학점은 제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인정한다.

제11조(졸업 요건) ① 교류대학교 학생에게 적용하는 교육과정은 복수학위과정 이수를 승인 받은 학년과 같은 입학연도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② 양 대학교 학생의 졸업 요건은 이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과 교류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아 소속 학부(과/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충족하고,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학부(과/전공)에서 정한 졸업인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양 대학교 학생의 졸업논문 등은 소속 학부(과/전공)장이 종류와 형태를 따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교류대학교에서 졸업을 인정받은 졸업논문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④ 양 대학교 학생이 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부(과/전공)에서 정한 졸업인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학위 수여) ① 이 대학교 학생의 경우 이 대학교 졸업일 25일전까지 교류대학교의 성적이 통보된 경우에는 당해 학기 졸업일에 학위를 수여하며, 그 이후에 성적이 통보된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위증서(졸업증서)는 양 대학교의 요청이 있는 학기에 발급하여 학생의 소속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업무 관장) 이 대학교 복수학위과정 이수 학생 선발과 생활지도 및 관리, 교류대학교 학생의 수학 허가, 학위증서 교환 관련 사항 및 양 대학교간 협의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관장하고, 복수학위과정 학생의 학점 및

성적인정, 졸업 인정과 학위증서 발급 등에 관한 모든사항은 교무처 학사지원과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7. 6. 26, 2010. 10. 27)

제14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대학교 학칙 및 학사관련 제 규정과 양 대학교간의 협정서 또는 상호 협의에 따른다.

부 칙 (2005. 10. 18.)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복수학위 수여에 관한 학술교류협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 6.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0.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1.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 제2항의 별지 제1호 서식)

교류대학교 이수학점 인정 심사 내역표

1. 인적 사항

순천대학교			교류대학교		
학부(과, 전공)	학 번	성 명	대 학 교	학부(과)	학번

2. 이수 학점 인정 심사 내역

가. 총 괄 표

적용 교육과정	졸업학점	학점인정 내역						학 점 인정계 (a+b+c)	
		학기	교양학점(a)				전 공 (b)		일반선택 (c)
			공동필수	기본교양	자유교양	소계			

나. 학기별 학점 인정 심사 세부 내역

협력(교류)대학교				우리대학교 인정(신청)내역					
이 수 구 분	교 과 목 명	학점 (시간)	성적	이 수 구 분	학 점 (시간)	성적	교과목 관련 학과 교수 확인		
							학과(전공)	담당 교수	확인
소 계	20 - 학기								
합 계									

첨부 : 성적증명서 부.

200 년 월 일

확인자 : 학부(학과,전공)장 (인)

순천대학교 총장 귀하

(제9조 제3항의 별지 제2호 서식)

교류대학교 학생 이수학점 인정 심사 내역표

1. 인적 사항

교류대학교				순천대학교	
대 학 교	학부(과)	학번	성 명	학부(과, 전공)	학 번

2. 이수 학점 인정 심사 내역

가. 총 괄 표

적용 교육과정	졸업학점	학점인정 내역							학 점 인정계 (a+b+c)
		학기	교양학점(a)				전 공 (b)	일반선택 (c)	
			공통필수	기본교양	자유교양	소계			

나. 학기별 학점 인정 심사 세부 내역

협력(교류)대학교				우리대학교 인정(신청)내역					
이 수 구 분	교 과 목 명	학점 (시간)	성적	이 수 구 분	학 점 (시간)	성적	교과목 관련 학과 교수 확인		
							학과(전공)	담당 교수	확인
소 계	20 - 학기								
합 계									

첨부 : 성적증명서 부.

200 년 월 일

확인자 : 학부(학과,전공)장 (인)

순천대학교 총장 귀하

복수학위과정 이수 포기원

1. 인적사항

대 학		학 부(과 · 전공)		학 년	
학 번		적용교육과정		성 명	

2. 교류사항

교류대학교	대학교	비고
교류허가기간	학년도 제 학기 ~ 학년도 제 학기	
이수기간	학년도 제 학기 ~ 학년도 제 학기	

3. 포기 사유

위와 같이 교류를 포기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신 청 자 : (인)

확인자 소속 학부(과 · 전공)장 : (인)

순천대학교총장 귀하